

## 【감면조치】

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분을 대상으로 **보험료가 감면**됩니다.

### ●대상자

-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생계활동을 주로 하는 자가 사망 또는 중병에 걸린 가구 ⇒ **보험료를 전액 면제**
-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생계비를 버는 가장의 수입 감소(※)가 예상되는 가구 중에서 다음의 요건 전부 해당하는 분 ⇒ **보험료를 일부 감액**

#### ※보험료가 일부 감액되는 구체적인 요건

가구의 생계활동을 주로 하는 자가

- (1) 사업 수입이나 급여 수입 등 수입의 어느 것이 2019년에 비해 10분의 3 이상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
- (2) 2019년의 소득 합계 금액이 1000 만엔 이하일 것
- (3)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종류의 소득 이외의 2019년 소득액의 합계금액이 400 만엔 이하일 것

### ● 대상 보험료

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보험료

### ● 신청기간

원칙적으로 2021년 3월 29일 ( 월 ) 까지

## 【상병수당금 지급】

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분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 ( 또는 발열 등의 증상으로 인해 감염이 의심되어져 ) 일을 쉬게 되신 분을 대상으로 상병수당금을 지급합니다.

### 1.대상자

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분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분 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감염 의심자

### 2.지급대상이 되는 일수

업무에 임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기산해서 3일 경과한 날부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서 업무할 예정이었던 날

### 3. 1일당 지급액 ※상한액 있음

최근 3개월간의 급여 등의 합계 금액을 업무일수로 나눈 금액 × 2 / 3

※급여 등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나 휴업보상 등을 받는 경우,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### 4.적용기간

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9월 30일

( 단, 계속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 등은 최장 1년 6개월까지 )